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기번호	법인설립일		
	신청 산림사업 종류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 (등록번호:)		
	자본금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방법

신청 산림사업 종류란과 기술인력 보유현황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